#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3

발의연월일 : 2020. 7. 29.

발 의 자 : 홍준표 · 김기현 · 한기호

윤영석 • 하영제 • 서일준

유한홍 • 이달곤 • 홍석준

최승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입학전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입학전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 등 다른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논란 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 만으로 대학 입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일부 학부·학과를 제외하고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학부·학과의 경우에는 시험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1. 일반전형: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2. 특별전형: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른 전형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5제4항 전단 중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로 한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5제4항 및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 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 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 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다음 각 (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호의 구분에 따른 입학전형을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교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 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으로-다. <단서 신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학부・학과의 경우에는 시험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 발할 수 있다. <신 설> 1. 일반전형: 일반학생을 대상 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신 설> 2. 특별전형: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 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 상기준에 따른 전형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 하는 전형

- ② (생략)
-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u>시행할</u> 수 있다.
- ④ ~ ⑨ (생 략)
-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제3
  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
  발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
  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중
  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
  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
  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
  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
  (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
  을 둘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중등교 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 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u> 행하
여야 한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삭 제>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 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 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 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 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 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 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 제하여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 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 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 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 <삭 제> 제한)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 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 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 원법」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 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 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 ③ (생 략)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 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저	342	준 으	]5(ı	개힉	입	학	전형	계획	틱의
	공공	弫)	1	~	3	(현	행과	같음	<u>)</u>
	4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 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u>대학</u> 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 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 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 원 의제) 입학사정관 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을	

⑤·⑥ (현행과 같음)<삭 제>